의 안 번 호	제49호
의결 연월일	2020. 5. 18.

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08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5월 08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5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행정재산(건물)을 조직 및 단체에 사용·수익허가 및 갱신 하는 사항 신설
- 생략사항 금액기준을 대장가액(취득가격)에서 기준가격(공시지가)으로 변경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

○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시 절차 명시(안 제20조)

○ 청사의 부지에 관한 사항(안 제46조)

-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

○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63조의 2)

-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